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1 ~ 53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1
2011 ~ 54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1 ~ 57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53
----------	-----------

제출연월일	2011. 8. 22.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우리군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3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기 및 내용 등(안 제4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주민의견 반영 규정(안 제5조)

○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규정(안 제6조)

○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둠(안 제8조)

○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안 선정 규정(안 제9조)

○ 공공디자인관련 사무처리 시 사전협의 규정(안 제10조~안 제12조)

○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다. 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제20조)

○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안 제15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변경, 가이드라인 수립 시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회의, 위원의 제척, 수당 등에 관해 규정(안 제17조 ~ 제20조)

라. 그 밖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21조~제22조)

마.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제3조, 제4조, 제13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 제6조, 제38조~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도로표지규칙」 제2조, 제6조, 제11조
- 「경상남도 경관조례」 제2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예산미확보(필요시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도시건축과(도시계획담당)

라. 그 밖 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7. 08 ~ 7. 28.) :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군과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출연·출자한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4. “가이드라인”이란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에 적용한다.

제4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14조의 거창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당사자 등에게 검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 재정비 시점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원칙과 공공 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공디자인 총괄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1. 별표의 공공건축물 중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10억원 규모 이상
2. 별표의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중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려면 공공디자인 총괄담당부서장(이하“총괄부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공공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공공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협의시기)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시 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2조(공공디자인 협의결과 조치 등) 총괄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 군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시계획, 공간·시각디자인, 건축, 조경, 공공예술, 조형예술, 조명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시 자문
 3. 시범지역 등 지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는 생략
 5.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10조제2항제1호 관련)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공청사	가. 군 청사 나. 소방서 다. 경찰서 라.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마.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문화복지 시 설	가. 복지회관 나. 체육관 다. 운동경기장 라. 공연장 마. 박물관 바. 미술관 사. 휴게소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개설 시 설 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도 마. 터널 바. 자전거도로 사. 보도 등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방음벽 다. 방호울타리 라. 5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등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다. 각종 전주 등	
문화관광 시 설	가. 관광안내도 나.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다. 동상·기념비 등 조형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공원 및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파고라 바. 광장 사. 공원(쌈지공원 포함)	
편의시설	가. 휴지통 나. 벤치의자 다. 공중화장실 라. 쉼터(shelter) 마. 음수대 바. 재떨이 등	
교통관련 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 군내버스, 시외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공중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함) 바. 공용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교통감시 시설 등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54
----------	-----------

제출일자	2011. 8. 2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우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에게는 귀감이 되게 하여, 자진납세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성실납세자 :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유공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 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성실납세자 :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추첨
 - 유공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
- 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상품권, 금고기관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인증서 또는 현판 수여, 세무조사 유예(3년간)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8조,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확보(1천만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 6. 30. ~ 7. 20.)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성실납세자 : 납세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범위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 가. 군 금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 나.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및 현판 수여
 - 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라.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
 - 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경우 표창 수여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57
----------	-----------

제출연월일	2011. 8. 2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규정되어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무상급식 등의 내용을 신설·확대하여 전부개정 함으로써, 우리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급식경비”를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품비 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 정의하고,
-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및 개선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급식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규정함

마. 학교급식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함

바. 학교급식 지원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촉하되,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을 하며,
- 급식지원센터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도·감독 및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군수는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 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고,
-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카.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15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 「축산법」 제35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확보(2억4천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6. 14.~7. 04.)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5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환경·생태 친화적으로 생산·육성·가공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식품
 -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5.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
2. 우수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3.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 강구
5.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비 확충 및 개선과 그 지원 및 운영·관리·감독

② 군수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2.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 지역 생산자·생산자 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따라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의 시기·절차·서식·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를 비롯한 위원회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결정
3.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창조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거창교육지원청 1명
3. 학부모단체 1명
4. 교원단체 1명
5. 농민단체 2명
6. 학교 영양사 단체 1명
7. 시민단체 1명
8. 지역언론단체 1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생산자·생산자단체 협약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2.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3.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4. 위원회, 거창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 및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 ⑥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